

(第77回－文化教育第1次)

<p>規定을 삭제하고 學生體育館을 一般에게 開放使用하게 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New設하는 것이고 教育規則에 委任하는 事項을 보다 명확하게 規定하는 것입니다.</p> <p>기타 일부 不合理한 文句를 整備하는 것입니다.</p> <p>改正根據는, 서울特別市松坡區等13個區設置와 區의管轄區域變更에 관한規程 第1條와 地方自治法 第15條를 根據했습니다.</p> <p>改正條例案은 别添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/p> <p>이상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代理 蘇中天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1. 개정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 1995년 5월 1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개정사유</p> <p>학생체육관의 설치목적으로 업무수행 사항과 일치시키고, 기관명칭을 “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”으로 하며, 소재지를 법정 주소지로 하고, 기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체육관의 기능중 “체육교사연수, 체육 특기학생훈련”을 “체육교사연수 및 체육 특기학생훈련지원”으로 하고, 기관명칭을 현행 “학생체육관”에서 “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조) ○ 학생체육관의 위치를 “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”로 하여 법정주소와 일치시킴(안 제2조) ○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학생체육관을 일반에게 개방·사용하게 할 수 있 	<p>는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 ○ 기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함(안 제5조제2항등) <p>4. 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2,367호, '87. 12.31) 제1조(서울특별시 송파구등의 설치) ○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 <p>5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(안) 제2조에서 학생체육관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송파구등 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2,367호, '87.12.31 공포) 제1조에 의거 강동구의 일부가 송파구로 구역이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, ○ 현행 조례 제4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을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청 전체로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삭제한 것이며, ○ 본 조례(안) 제4조에서는 학생체육관을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「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는」규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 ○ 본 조례(안) 제1조, 제5조 및 제6조는 일부 규정을 자구수정한 것으로 사료됨. ○ 따라서 본 조례(안)은 학생체육관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와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,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(안)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---	--